#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의 안 번 호 | 886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정현미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칙을 규정(안 제1장)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를 규정(안 제2장)

- 대비계획,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지역 설정·게시 (안 제4조~제7조)

○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을 규정(안 제3장)

- 안전관리요원 임무, 모집선발·자격기준 및 교육·훈련(안 제8조~제10조)

○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규정(안 제4장)

- 대응계획,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상황보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비밀유지(안 제11조~제15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지도 · 감독을 규정(안 제5장)

-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무 · 운영시간, 안전장비, 지도 · 감독(안 제16조~제19조)

○ 예산을 규정(안 제6장)

-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안 제21조~제22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매년 여름철 하천과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절기 전 전수조사를 토대로 내실 있는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 감시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례로 명문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습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의 안 번 호 | 887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박은경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의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칙을 규정(안 제1장)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갈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장)

-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갈등영향분석(안 제5조~제6조)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규정(안 제3장)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기능·구성 및 회의 운영, 심의 결과의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안 제7조～제11조)

○ 갈등조정협의회를 규정(안 제4장)

-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합의 결과문의 이행 등 (안 제12조～제14조)

○ 보칙을 규정(안 제5장)

- 자료 제출, 수당, 비밀 준수 의무, 준용(안 제15조～제18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과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는 갈등관리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과 협의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 의 안 번 호 | 888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김동훈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구축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민간의 정책 참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디지털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디지털취약계층의 복지 연계 서비스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부칙 안 제2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5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역량강화 교육과 사회활동 지원,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1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디지털포용법」의 시행 취지에 부합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활용 역량 제고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목적,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상위법과의 저촉이나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br>번 호 | 889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이정애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기록의 표준화와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주민참여감독자” 및 “감독공무원”에 대한 정의

○ 공사의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 시공 문제 통지
- 감독공무원의 조치

-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작성 및 제출

○ 주민참여감독자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서식(별지 1호·별지 2호서식)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생활밀착형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참여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서, 본 안건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와 감독공무원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하여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로 기록·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절차와 서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사 현장 관리의 객관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현장 중심의 감독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890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원주영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형태의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주취자 난동, 폭언·폭행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영업이 많은 업종의 경우 범죄에 취약한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및 보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안 제11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심리적·물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891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원주영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영업 시 음식물 등을 단순가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외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을 허용하도록 함.(안 별표2 제1호)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여 음식물의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외영업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옥외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 및 가열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본 개정을 통해 음식물의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소음·냄새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897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정책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돌봄 전담 조직 신설

- 명칭 변경 : (기존) 복지정책과 ⇒ (변경) 통합돌봄과

○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2)

- 명 칭 변 경 : (기존)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 (변경) 진건건강생활지원센터
- 소재지 변경 : (기존) 다산중앙로 7(다산동) ⇒ (변경) 진건오남로 41-19(진건읍)
- 관할구역 변경 : (기존) 다산동 전 지역 ⇒ (변경) 진건읍, 퇴계원읍 전 지역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 설치 제외”가 규정되어 있어 이전 결정 (남양주보건소 다산동 소재)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복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명칭 변경의 경우 국가 복지정책의 방향인 통합돌봄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시정 조치가 상당 기간 지연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898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정책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정원 변동사항 : 2,427명 ⇒ 2,436명(+9명)

○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

- 일반직 6급 : 517명 ⇒ 518명(+1명)
- 일반직 7급 : 662명 ⇒ 665명(+3명)
- 일반직 8급 : 562명 ⇒ 566명(+4명)
- 일반직 9급 : 505명 ⇒ 506명(+1명)

○ 인건비 비용 추계액(연간) : 약 537백만원

※ 1년간 인건비 소요액 기준임

○ 주요 변동내용

-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정원 2,427명에서 2,436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 및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899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조문의 모호한 주체를 명확히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

- 기획조정실장 → 민원총괄 업무담당 국장(안 제3조제2항)
- 감사관, 의회법무과 → 감사부서의 장, 법무부서(안 제3조제3항)

○ 조문의 모호한 주체 명확화

-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는 주체를 “관련부서” 로 규정(안 제10조제1항)
- “회의 일정을 통지받는” 주체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 으로 규정 (안 제10조제3항)

○ 수당 지급 대상 정비

- “위촉직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 → “위촉직 위원”(안 제13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조례안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자료 제출 및 회의 일정 통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여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 의 안 번 호 | 900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현 양정동 청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센터 이전 필요.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 재산관리과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위 치: 일패동 188번지 일원(남양주왕숙2 복합커뮤니티2)

○ 부지면적: 2,673㎡

○ 건물규모: 연면적 약 740㎡(가설건축물 1층, 2개동)

| 합 계 | 민원실<br>동장실 | 회의실 | 서고 | 전산실 | 창고 | 비상근무<br>대기실 | 식당 | 기타 |
|---|---|---|---|---|---|---|---|---|
| 740㎡<br>(224평) | 210 | 60 | 100 | 60 | 100 | 50 | 60 | 100 |

○사업기간: 2026. 4 ~ 2026. 12.

○소요예산: 25억원

| 계 | 부지매입비 | 공사비 | 용역비 | 감리비 등 기타 |
|---|---|---|---|---|
| 25 | - | 20 | 0.5 | 4.5 |

○토지현황

※ 지적분할 후 면적확정

| 소재지 | 지목 |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 계 | | 27,522 | 2,673 | |
| 일패동 188 | 답 | 1,847 | 1,443 | 한국토지주택공사(4/5)<br>경기주택도시공사(1/5) |
| 일패동 172-2 | 답 | 970 | 155 | |
| 일패동 172-3 | 답 | 905 | 585 | |
| 일패동 산13 | 임야 | 22,446 | 165 | |
| 일패동 172 | 구거 | 1,354 | 325 | 국(농림축산식품부) |

(2) 추진현황

○ 2025. 12. 9. : 토지 사용 협의 완료(GH)

○ 2025. 12. 11. : 일상감사 완료(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2025. 12. 15. :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검토 보고

○ 2026. 2. 25.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3) 향후 추진계획

○ 2026. 3.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 2026. 3.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 2026. 4. : 제1회 추경 사업비 25억원(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편성

○ 2026. 4. : 실시설계 용역 수행

○ 2026. 8. ~ 2026. 12. : 공사 추진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안건은 현 양정동 청사가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청사 이전이 필요하여, 일패동 188번지 일원에 양정동 임시청사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사업 내용은 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2부지에 연면적 740㎡ 규모의 1층 가설건축물 2개 동을 설치하여 민원실, 회의실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2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토지 사용 협의와 일상감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임시청사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청사 진입을 위한 현황도로 정비 등 이전 준비와 주민 이용 편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운영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901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구축된 공간임.
- 단순 판매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제품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으로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관의 운영을 통해 관내 당사자 조직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근거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운영)

(2) 위탁사무 내용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의 운영

- 홍보판매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 홍보판매장 이용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 사회적경제 제품의 입점 심사, 재고 관리 및 매장 관리
- 제품 판매, 결제 시스템(POS) 관리 및 수익금 정산
- 입점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 연계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기타 시장이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3) 위탁시설 개요

| | | |
|---|---|---|
| 시 설 명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 |
| 소 재 지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38, 정약용도서관 1층 | |
| 조 성 일 | 2025. 10. 1. | |
| 시 설 규 모 | ○ 약52㎡<br>○ 주요시설 : 매대 등 | |
| 사 업 내 용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제품의 홍보 및 판매 | |
| 위 치 도 & 현 장 사 진 | | |

(4)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 위탁 가능
- 다만, 최초 민간위탁 건으로 향후 관리운영 상황에 따라 재계약 및 계약 취소 등 행정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3년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 (1회 갱신 가능)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리위탁의 경우 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자격 제한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한경쟁 :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은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간지원 조직 등으로 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활용
  - •본 관리위탁은 별도의 위탁료나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고 운영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인 가격중심의 낙찰 방식(최저가 등) 적용이 부적합
  -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의 우수성, 당사자 조직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력,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가장 적정함.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위탁사업비: 없음

- 원가분석 결과, 시설 운영을 통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탁료 0원으로 책정

- 홍보판매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자체 수입(판매 수수료 등)으로 운영 인력의 인건비 및 직접 운영비를 우선 지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
- 운영비 충당 후 잔여 수익금이 발생할 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거나 위탁시설 개선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확립
- 별도의 위탁사업비 지원 없이 자체 사업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관리에 드는 일부 경비는 지원 가능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해 온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 직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유통·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경제 홍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안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 시 지역 네트워크가 부재하거나, 관외 업체가 선정될 경우 '관내 기업의 판로 지원과 소통'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지나치게 상업적인 유통·마케팅만을 강조할 경우 관내 사회적 기업의 홍보 및 공공 굿즈 판매처라는 공익적 조성 의도와 상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시설의 설치 목적과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902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다산아트홀 운영 체계를 재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조례안 제4조 ~ 제12조)

○ 사용료 반환기준 구체화(조례안 제18조 및 규칙안 제3조)

○ 수탁기관(문화재단)의 탄력적 운영 기반 마련(조례안 제24조 ~ 제25조)

○ 회원제 및 감면 기준 정비(조례안 별표 2 및 별표 3 삭제)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출범한 남양주문화재단이 다산아트홀을 수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탁기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의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였고, 대관 취소 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총 5단계로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민원과 금전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회원제와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다산아트홀 운영 체계 전환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여 관련 제도를 재편하고,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 사 보 고 서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903 |
|---|---|

2026. 3. 16.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3.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수동관광지 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야영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캠핑장은 전문적 시설관리와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내용

○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 가족쉼터 이용객의 안전관리

○ 가족쉼터 주변 환경정비(청소 등)

○ 가족쉼터 시설사용료 징수 및 집행

○ 가족쉼터 공공운영비(전기, 수도요금 등) 납부

(3)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 | |
|---|---|
| 시 설 명 |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
| 소 재 지 |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237-1번지 일원 |
| 시 설 규 모 | 토지면적 : 8,115㎡<br>숙박시설 : 일반야영장 20면, 자동차야영장 25면, 캐빈 2개<br>편의시설 : 관리실 1개소, 화장실 2개소, 개수대 2개소, 주차장 29면, 창고 1개소, 부대시설 1개소 |
| 사 업 내 용 | 공공캠핑장 사용객 예약 접수 및 사용료 징수, 시설물 유지 관리 등 |

(4) 민간위탁 기간

○ 2026. 7. 1. ~ 2031. 6. 30.(5년)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위탁방법 :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①항**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가격 경쟁 위주의 선정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수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본 사무는 별도의 신규 예산 소요는 없으며, 수탁자가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시는 위탁료를 세입으로 징수함. 다만 시설 보수·정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필요 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구 분 | 검 토 의 견 |
|---|---|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공공성 성격을 지닌 여가·휴식 서비스로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며,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원리 적용과 시의 지도·감독을 통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여 관리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 시의 관리·감독 및 위·수탁 운영기준을 통해 관리위탁 시 공공성과 운영 안정성 확보 가능함 |
| **경제적 효율성** | ○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시설 특성상 탄력적인 인력·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안전·위생관리 등 전문 업무를 민간이 |

| 구 분 | 검 토 의 견 |
|---|---|
| | 수행함으로써 행정비용과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 캠핑장 특성 상 전문적 운영 역량과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시설로 직영 방식보다 관련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성과평가로 운영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정기 점검·보고 체계와 감사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확보됨 |
|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과 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 사례 축적을 통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역량이 검증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종 합 의 견 | ○ 수동관광지 가족쉼터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며, 수탁자의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추진 시 위탁사무의 공공성 및 필요성, 수탁자 선정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의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왕은선)

○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수동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의 관리·운영 사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공공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은 법령상 적용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조례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캠핑장은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크고, 안전·위생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전문적이고 현장 대응 중심의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 보수·정비 등 대규모 유지관리 비용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만큼, 5년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설투자 책임의 범위와 비용 분담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기준과 지도·점검 및 목표 평가 체계를 구체화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